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201
2026.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해상풍력 보세건설장 허용” 첨단산업 규제 개선

[이주의 초점]
관세청, ‘선운송 후수출입신고’ 도입 등
6개 보세제도 손질 (4p)

[위클리뉴스]
경유 수출 상한 100→110% 요소·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는 종료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EU 포장재규제 시행 두 달… 韓 수출기업 82.5% “이해 부족” (7p)

[오피니언: 미국 통관]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총정리 (14p)

[품목분류 동향]
산업용 노와 오븐의 품목분류, 핵심은 ‘기능’ (23p)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1월 2일(통권 제2201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해상풍력 보세건설장 허용… 첨단산업 규제 개선

07 Weekly News

오피니언

14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이정운 Crowell & Moring LLP
(미국 변호사)

관세행정실무해설

21 **질의응답사례**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립한 경우
원산지 표시

품목분류동향

23 **품목분류해설**

산업용 노와 오븐의 품목분류, 핵심은 '기능'

김명섭 더컨설팅그룹 THE관세연구원 원장
(관세사)

36 **세번 바로잡기**

면직물 블라우스의 HS Code

이영주 중앙관세분석소

해상풍력 보세건설장 허용··· 첨단산업 규제 개선

선운송 후수출입신고 도입 등 6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관세청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4,7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서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기업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에 대한 보세건설장 특허 허용, ▲보세건설장 공사용 외국 장비에 대한 과세보류 허용, ▲첨단전략산업 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연구·개발 시제품 등의 보세공장 외부 검사 절차 간소화, ▲지방 소재 첨단기업에 대한 수출 운송 절차 간소화, ▲첨단제조장비 예비 부분품의 보세공장 반입 범위 확대 등이다.

해상풍력도 보세건설장 허용·첨단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전력공급시설 등을 보세건설장 특허 대상에 포함**한다. 전남 신안군과 영광군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됐던 보세건설장을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세건설장은 외국물품 기계류·설비품 등을 관세·부가가치세가 유보된 상태로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허보세구역이다. 이에 따라 발전기나 블레이드 등 주요 외국 기자재도 과세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설치 비용이 줄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세건설장에서 측정이나 분석에 쓰이는 공사용 외국 장비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에서 제조 시설에 포함되는 기계·설비는 과세보류가 허용됐으나 측정기기와 크레인 등 외국 장비는 세금 납부 후 사용했다.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단지 등에 구축되는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해당 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있고, 단지 내 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특허 갱신 절차도 면제된다.



출처: 관세청

선운송 후수출신고 도입, 수리용 부품도 보세공장 반입 가능

반도체·바이오 등 연구·개발용 외국 시제품을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장소에서 검사·테스트할 경우 장외작업 허가를 받거나 수입통관 후 반출해야 했으나 관련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내에서 시제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에 소재한 첨단기업이 운송 후 수출신고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첨단산업은 수출납기가 중요하나 거리와 통관 등의 사유로 물류 운송이 지체될 수 있다. 관세청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지정해 첨단물품을 사전에 승인 받고 적재지로 먼저 운송하고 운송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운송 후수출신고'를 도입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역에서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만까지 운송·적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이 대상이다.

해외 본·지사에서 생산한 장비의 하자보수용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보수용 부품만 반입 가능하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생산된 첨단장비의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때 해외 각국의 예비·수리용 부분품을 신속하게 공급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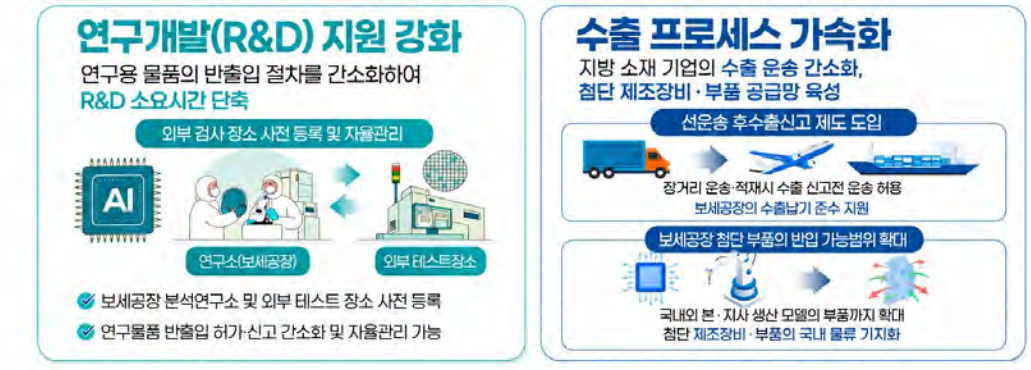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이 같은 규제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는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과 수출물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지 기대를 모은다. | 김다솔 기자 |

과제별 보세제도 개선 내용 및 시행 시기

과제명	현행	개선	시행 시기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보세건설장 특허 허용	육지 보세건설장만 보세건설장 지정 허용	해상 좌표를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보세건설장 대상 확대	2026.11.
보세건설장 공사용 외국 장비 과세보류 허용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 과세보류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 과세보류	2026.11.
첨단전략산업 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개별 기업·사업장 단위의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건설장 등 특허 신청	첨단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 외국 원재료 과세보류, 단지 내 물품 자유로운 이동 허용, 특허 갱신 절차 면제	상시
연구·개발 시제품 등의 보세공장 외부 검사 절차 간소화	연구물품 외부 반출 시 건별로 장외작업허가 및 반출입 신고 필요	자율관리보세공장 장외작업장 포괄 등록 및 장외작업허가·반출입신고 간소화 - 자율관리 후 분기별 반출입 내역 제출	2027.1.
지방 소재 첨단기업 수출 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생산 수출물품에 수출신고 수리 후 반출신고 및 적재지로 운송	자율관리보세구역에 관해 사전 승인 받은 첨단물품을 우선 운송한 이후 수출신고 허용 - 운송 및 반출신고 절차 간소화	2027.1.
첨단제조장비 예비부분품의 보세공장 반입 범위 확대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돼 반출된 제품의 하자 보수용 부품만 반입 가능	해외 본·지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하자보수용 부품도 반입 허용	2027.1.

경유 수출 상한 100 → 110%
요소·주사기 매점매석 고시는 종료

내수공급·적정 재고 확인… 11월 수출분부터 적용

정부가 11월부터 경유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에서 110%로 조건부 확대한다.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해 온 매점매석 금지 조치[1]는 10월 31일 종료한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 한도를 지난해 같은 달의 110%까지 허용**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 도입 차질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해당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산업부는 최근 원유 도입 여건이 안정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면서 수출제한을 일부 완화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의 100% 이상 확보됐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월 3주차까지 국내 경유 소비량은 누적 기준 7.2%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에 활용하기로 했다.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은 뒤 국내 공급과 재고 여건을 확인한 뒤 수출 물량을 관리한다. 산업부는 국내 수급 전망에 따라 수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급 불안이 우려되면 종전 기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10월 31일로 끝난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8일 관련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과도한 물량 보유와 판매 기피 금지, 물량 보고 및 특별단속이 종료된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는 3월 27일,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시행돼 왔다. 정부는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돼 요소수와 요수 재고가 양호한 수준이며, 주사기도 지난 6월부터 국내 제조업체 재고

1)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가 꾸준히 늘어 고시를 시행할 당시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는 해당 고시가 종료된 후에도 요소수와 의료용품의 수급·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 불안이 재발할 경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적용 물품	시행기간	적용 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요소수 요소	2026. 3.27.~10.31.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 요소 수입·판매자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해 7일 이상 보관 금지
주사기 주사침	2026. 4.14.~10.31.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금지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향후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 수출자 10곳을 대상으로 한 가격약속도 수락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0월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서 덤핑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가 확인됐다고 최종판정했다. 무역위는 10개 중국 수출자의 가격약속을 5년간 시행하는 한편, 공급자별로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를 없앨 수 있는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약속을 수락받은 수출자가 이를 이행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약속을 위반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용도	건축자재(지붕재, 외장재, 구조재 등),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및 강관 등
품목분류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제7226.99-3000호
관세율	기본세율 8.0%, 한·중 FTA 협정세율 0%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2차 재심 결과 10.32%로 5년간 연장할 것을 재경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덤핑방지조치(2021.5.3.부터 8.78~10.32% 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인쇄용 판으로 평판인쇄 전반에 사용된다. 제3701.30-2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관세율, 한·중 FTA 협정관세율 모두 0%다. | 김다솔 기자 |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해외직구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받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포털(ecos.customs.go.kr)이 정식 가동됐다. 관세청은 정상 거래된 물품은 신속 처리하고 위해물품이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화물에 검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0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했다. 플랫폼은 8월 28일부터 진행한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정식 개통됐다.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관세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직구 이용자의 본인확인에는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가 활용된다. 이용자는 상품을 주문할 때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통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본인확인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고정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복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물품 특성을 반영해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하고, 주문·결제·상품·배송정보를 수입신고 자료와 연계해 화물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한다. 전자상거래 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등록·관리한다. 국내외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등 등록 대상 사업자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주문·상품정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제출된 거래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취급한 물품은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거래정보가 부족하거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X-ray 판독과 검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2026년 3분기 항만 물동량 4억 691만톤… 환적 20.7%↑

올해 3분기 전국 무역항이 처리한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줄었지만, 중국 항만이 혼잡해 부산항과 광양항의 대체 기항 수요가 늘면서 환적 화물이 20% 넘게 증가했다.

해양수산부가 10월 29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전국 무역항 물동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물동량은 4억 691만톤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화물은 3억 5,153만톤으로 2.9% 늘었고, 국내 항만 간에 운송된 연안화물은 5,538만톤으로 7.0% 줄었다.

구분	2025년 3분기	2026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전체 항만 물동량	4억 130만톤	4억 691만톤	1.4% 증가
수출입	3억 4,175만톤	3억 5,153만톤	2.9% 증가
컨테이너 화물	791만TEU	858만TEU	8.5% 증가
수출입 컨테이너	439만TEU	434만TEU	1.1% 감소
환적 컨테이너	347만TEU	419만TEU	20.7% 증가
비컨테이너 화물	2억 6,420만톤	2억 5,393만톤	3.9% 감소

자료: 해양수산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858만TEU로 8.5% 증가했다. 그중 수출입 컨테이너는 434만TEU로 1.1%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4%, 일본이 6.9% 증가했다. 중국은 0.9%, 말레이시아는 15.7%, 중동지역은 49.5% 감소했다. 환적화물의 경우 20.7% 늘어난 419만TEU를 기록하며 감소분을 만회했다. 특히 유럽이 108.8% 늘었고 중국 25.5%, 미국 22.8%, 일본 11.2% 증가했다. 해수부는 **중국 항만이 태풍으로 혼잡해지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대체 기항하는 선박이 늘어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보면 부산항은 677만TEU를 처리해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0.3% 줄었지만, 환적화물이 20.3% 늘어난 409만TEU에 달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광양항은 주요 글로벌 선사의 항로 조정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6.7% 줄어든 반면, 중국 항만의 기상악화에 따른 대체 기항이 늘면서 환적 물동량은 50.2% 증가했다.

한편,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가스 수입 감소와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석유 정제품 물동량 축소로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2억 5,393만톤)은 3.9% 줄었다. | 김다솔 기자 |

국산 신품종 포도 '글로리스타', 중국 첫 수출

국산 신품종 포도인 '글로리스타(Glory Star)'가 중국으로 첫 수출에 성공했다. 이번 수출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포도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리스타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붉은색 계열의 신품종 포도로 알이 크고 씨가 없으며 아삭한 식감과 18~20브릭스의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또한, 10월에 수확하는 만생종으로 저장성이 뛰어나 장거리 수출에 유리하며,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 돼 기후변화 대응에 좋은 품종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 '포도 수출 1억달러 도약 현장 결의 행사'를 개최하고, 수출물량 확보, 생산·품질, 신선물류, 마케팅, 공정거래 등 5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0월 28일 중국 신선 농산물 바이어를 초청해 글로리스타의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9월 필리핀에서 '한국산 포도 신규 수입 기념 런칭쇼 및 바이어 품평회'에 참가했는데, 지난해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 협상이 18년 만에 타결된 뒤 처음 열린 공식 행사였다.

aT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선포도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5,790만 8,000달러(5,142톤)에 달했으며, 2025년 8,573만 8000달러(9,949톤)를 달성했다. | 김다솔 기자 |

EU 포장재규제 시행 두 달… 韓 수출기업 82.5% "이해 부족"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지난 8월 12일 시행됐지만,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월 27일 발표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EU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 6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2.5%가 PPWR을 전혀 모르거나 명칭과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PPWR은 EU가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플라스틱뿐 아니라 종이·유리·금속·목재 등 다양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판매·보호·운송 등에 사용되는 포장에도 적용된다.

올해 **8월 12일**부터는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과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 기본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재활용성,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등 주요 요건은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기업은 자사의 포장재가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재의 재질과 구성, 적용 기준,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문서가 필요하며,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역할에 따라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포장재 재질과 중량을 파악했더라도 재생원료 함량이나 재활용성을 입증하려면 공급업체의 증빙 또는 별도 평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원재료와 생산공정 관련 정보는 포장재 제조업체나 원재료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수출기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의 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험·평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연도별 적용되는 PPWR 주요 의무

2026년 기본의무 적용	2026.8.12. 중금속·식품 접촉 PFAS 제한 기술문서·EU 적합성선언 및 식별정보 제공
2028~2029년 표시·수거 등 요건 확대	2028.2.12. 포장 퇴비화 적합성·판매포장 빈공간 최소화 2028.8.12. 이후 EU 공통재질 표시 2029.1.1.까지 음료용기 90% 이상 분리수거·보증금 환급제 구축 2029.2.12. 이후 재사용 포장 표시·디지털 정보 제공
2030년 설계·소재·사용기준 강화	2030.1.1. 중량·부피 최소화, 특정 포장 형식·용도 제한, 재사용 목표 2030.1.1. 이후 재활용 A~C 등급, 재생원료 최소함량, 빈공간 50% 상한
2035년 실제 재활용 요건 적용	2035.1.1. 분리수거·선별 가능성 2035.1.1. 이후 대규모 재활용
2038~2040년 재활용·재생원료기준 상향	2038.1.1. 재활용 A·B 등급만 시장 출시 2040.1.1.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최소함량 상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이렇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정작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이해 수준은 낮았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PPWR 적용 진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6.7%에 불과했다. PPWR은 포장재의 재질과 용도, 공급망에서 기업이 맡는 역할 등에 따라 적용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규정의 개요만 파악해서는 자사 제품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EU 거래처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 포장재 구성과 재질, 중량 등 기본 정보

외에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평가 결과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기업 356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생원료 공급자 증빙, 재활용성 평가자료,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제품 포장에 2개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 PPWR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 기업은 연질플라스틱·필름(7.9%), 복합재(19.9%) 등 다른 재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PPWR 대응 과정에서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꼽은 기업은 32.3%, 시험·인증·컨설팅 비용이 부담된 기업은 30.3%였다. 규제 대응에 필요한 비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기업도 많았다. 일회성 투자비용을 산정하지 못한 기업은 49.3%, 연간 반복비용을 산정하지 못한 기업은 54.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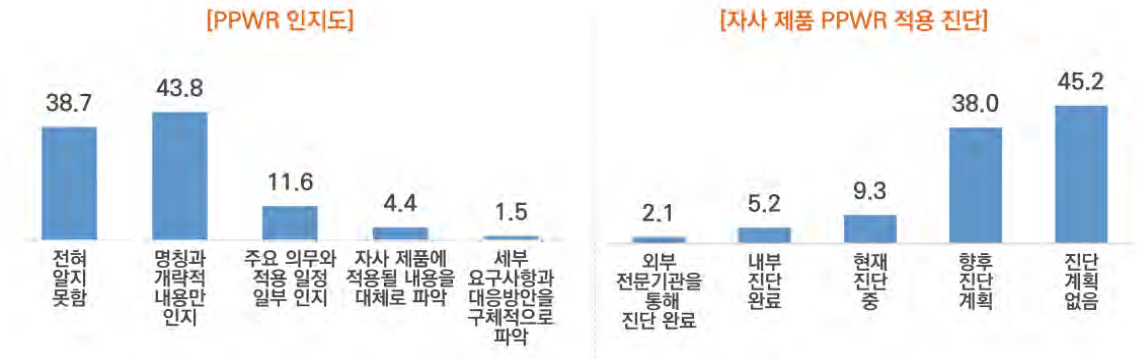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무역협회는 수출기업과 포장재 공급업체의 공동 자료 점검, 대체 소재 공급업체 및 시험기관 연계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기업별 준비 수준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에 PPWR 규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기업에는 제품별 진단을, 진단을 시작한 기업에는 증빙자료 보완과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EU PPWR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무역협회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PPWR 대응은 포장재 변경뿐 아니라 적합성 입증과 공급망 관리까지 포함하는 과제"라며, "거래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총정리



이 정 운(Pierce Lee)
Crowell & Moring LLP(미국 변호사)

美,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왜 이렇게 많은가

최근 미국이 캐나다를 대상으로 관세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고,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많았는가"라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동원된 법률만 해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섯 가지에 이른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미국 헌법의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 헌법상 관세를 포함한 과세 권한과 외국과의 통상을 규율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속한다.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개별 법률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각기 다른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해 왔다.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 국가안보를 위한 법, 국제수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외국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 각각 따로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일은 새로운 관세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위임 조항들을 하나씩 꺼내 쓴 것이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관세 권한을 위임하려 할 때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처럼 관세 고유의 용어와 조건을 명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그 법률들이 관세 위임 조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행정부가 각 조항을 실제로 사용한 방식이 적법한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무역법 122조 관세는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와 관세법 338조 캐나다 관세도 각각 CIT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에 따라 관세의 지속 기간, 세율 상한, 조사 절차, 소송 가능성, 환급 가능성은 모두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다섯 가지 법적 근거를 각각 살펴보고, 이와 별도로 운영되는 전통적 무역구제 제도와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법전에 남아 있는 근거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IEEPA: 위헌으로 끝난 근거, 그러나 상호관세 환급은 진행 중

IEEPA는 본래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외국 관련 경제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주는 제재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와 마약 유입을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 법상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산업이나 품목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사실상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IEEPA는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해석을 배척했다.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곧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부는 판결 직후 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했고, 이미 납부된 관세는 국제무역법원 명령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단계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미 최종 정산(final liquidation)된 수입신고건의 환급 범위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해 아직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판결이 IEEPA 자체를 무력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판결은 IEEPA상 ‘관세’ 권한만 부정했을 뿐, 금수조치·자산동결·거래제한 등 전통적인 제재 권한은 그대로 행정부에 남아 있다.

무역법 122조: 150일짜리 임시 수입부과금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적대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Enemy Act)을 근거로 10% 수입부과금을 부과했던 전례를 의회가 통제하기 위해 1974년에 만들어졌지만, 2026년 전까지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 판결 당일, 이 조항을 근거로 10% 수입부과금을 선언했고, 150일 기한이 도래한 2026년 7월 24일 122조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 없이 예정대로 만료됐다. 결과적으로 122조는 IEEPA 관세가 사라진 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연결 수단으로 기능했다.

다만 122조 관세는 만료 전부터 법적 문제에 부딪혔다. 국제무역법원은 2026년 5월 행정부의 122조 수입부과금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원고들에 한정돼, 그 밖의 수입업체에 대한 징수는 만료일까지 계속됐다. 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했고, 현재 시점(10월 29일) 기준으로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가장 견고하고 대상도 가장 넓은 근거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상무부가 판단하면 대통령이 그 품목과 파생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IEEPA보다 느리지만, 일단 조사를 거치면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다.

232조가 현재 미국 관세체계의 중심축이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다. 연방대법원은 1970년대에 232조상 '조정' 권한이 수량제한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부과금 같은 금전적 조치를 포함한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1기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소송에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32조가 대통령에게 위헌될 만한 과도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이후 대통령이 최초 조치 이후에도 세율을 올리거나 파생제품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허용된다고 봤다. 232조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모두 실패했다.

트럼프 2기에서 232조 조사는 크게 늘어,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부품, 트럭,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드론 등 다수 품목에 232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여러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32조의 또 다른 특징은 '파생제품'이다. 232조는 명문으로 해당 품목뿐 아니라 그 파생제품에 대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부는 신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후속 포고령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함유 제품 등 하류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계속 넓혀 왔다.

무역법 301조: IEEPA 상호관세의 실질적 후계자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행위·정책·관행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조사를 거쳐 관세를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1기의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지식재산권 조사와 그에 따른 對中 관세가 가장 잘 알려진 사례다. 조사 개시, 상대국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세율 상한이 없고 조사 대상 관행과 무관한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판결 3주 뒤인 2026년 3월 두 묶음의 301조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 다른 하나는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다. 강제노동 조사는 이미 관세로 이어졌다.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122조 관세가 만료되는 2026년 7월 24일부터 60개 경제권의 제품에 원칙적으로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산은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세율을 포함해 12.5%가 되도록 관세가 부과되며,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제외된다.

이 조치의 구조를 보면 301조가 사실상 IEEPA 상호관세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전 품목에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상한을 두며,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은 제외하는 방식이 IEEPA 상호관세와 거의 같다. 차이점은 조사 기록이 존재하고 '강제노동 수입금지'라는 구체적인 시정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이 관세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와 25개 주정부가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9월 30일 구두변론이 열렸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관세법 338조: 제정 후 처음 꺼낸 1930년 법

관세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는 외국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취급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상품에 최대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이 계속되면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하지만, 1930년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었고, 법원의 해석도 축적돼 있지 않다.

338조가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점은 사전 조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 조사를, 무역법 301조는 무역대표부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법 338조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차별 사례를 조사해 대통령에게 알리도록 할 뿐 대통령의 차별 인정만으로 발동된다. 반면 세율이 50%로 제한되고 국가별 조치만 가능하며, 포고 후 30일이 지나야 발효된다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7월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338조를 처음 발동해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관세를 포고했고, 이 관세는 8월 22일 발효됐다. 캐나다가 9월 8일 보복관세로 대응하자 행정부는 같은 날 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일부 캐나다산 주류·유제품·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추가로 발표했다. 행정부는 이 관세가 USMCA[1] 원산지 제품에도 적용되고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더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38조의 적법성은 2026년 10월 20일 처음으로 법원에서 다투어지게 됐다. 캐나다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업체가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338조는 무역법 301조 등 이후 입법으로 대체된 조항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캐나다의 조치는 338조가 요구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별도로 운영되는 전통적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법률은 모두 대통령 또는 USTR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동되는 '행정부 관세'다. 그러나 미국에는 이와 별도로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전통적 무역구제 제도가 있다. 반덤핑·상계관세[AD(Anti-Dumping)/CVD(Countervailing Duty)]와 세이프가드가 그것이다.

반덤핑·상계관세는 1930년 관세법 제7편에 근거해 상무부와 국제무역법원이 준사법적 절차로 부과한다. 대통령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미국 국내 산업의 청원으로 개시되며, 덤핑 또는 보조금의 존재와 국내 산업의 피해라는 두 요건을 각각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판정한다. 또한 같은 국가의 같은 제품이라도 기업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한국산 철강·화학 등 다수 품목에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유지되고 있고 새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232조나 301조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도 반덤핑·상계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법 201조(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근거한다.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국제무역위원회가 판정하면 대통령이 관세,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이 없어도 발동될 수 있는 대신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 판정이 필요하고 조치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부과된 세이프가드 관세가 201조 사례다.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근거들

지금까지 사용된 다섯 가지와 전통적 무역구제 외에도, 미국 통상법에는 대통령에게 관세나 수입제한 권한을 주는 조항이 몇 가지 더 남아 있다.

무역법 406조(Section 406 of the Trade Act of 1974)는 **'공산주의 국가'의 상품 수입이 급증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이 발생한 경우,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201조보다 낮은 피해 기준을 적용하고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법문상 공산주의 국가에만 적용된다.

무역법 125조(Section 125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종료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한과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을 포고**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행정부가 협정을 우회하는 대신 협정 자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적용될 조항이다.

적대국교역법(TWEA)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례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10% 수입부과금의 근거가 TWEA였고, 당시 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봤다. IEEPA는 1977년 TWEA의 평시 적용을 분리해 만든 법이고, 122조는 닉슨의 수입부과금 같은 조치를 의회가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TWEA는 현재 전시에만 발동할 수 있다.

의회가 **새로운 관세 권한을 입법으로 만드는 경우**도 이미 나타났다. 2026년 9월 제정된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은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수입국 등의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국익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6일 행정명령으로 해당 유예 권한을 행사해 관세 적용을 보류했다. 반대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 행사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결론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결국 의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관세 권한을 조금씩 나눠 대통령에게 위임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조항들을 하나씩 꺼내 썼고,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로 옮겨 왔다. IEEPA에서 122조로, 다시 232조와 301조로 무게중심이 옮겨 온 과정이 그것이다. 아직 쓰이지 않은 조항들과 의회의 새 입법까지 고려하면 관세의 법적 근거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다.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원산지

압력계(HS 제9026호)를 수입해 국내에서 소화기 부품으로 조립한 후 국내외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시 생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수입물품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중략> ···

1. 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국내외 판매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내생산물품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 및 제8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제1항 3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물품명)의 원산지: 국명'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실질적 변형: HS 6단위 변경)의 공정을 거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이거나, ▲세번변경이 안됐더라도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해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와 제86조 적용대상의 구분은 수입 후 국내에서 이뤄진 제조공정이 단순한 '결합' 수준의 공정인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수준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수준의 공정인지가 핵심적인 구분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징수

당사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입신고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의 '출력〉개별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신고〉통관서식 출력〉세금계산서(개별)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입신고 내역(신고인, 품명 등)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입신고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로그인·출력·정보확인 등 유니패스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유니패스 홈페이지〉고객센터〉커뮤니티〉질의응답' 또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산업용 노와 오븐의 품목분류, 핵심은 '기능'

제8417호 적용 범위와 제8419호·제8514호 등 경합 세번 분석

김 명 섭 | 더컨설팅그룹 THE관세연구원 원장(관세사)

세계 산업용 오븐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츠 리서치(Straits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산업용 오븐 시장 규모는 2025년 86억 4,000만달러에서 2034년 126억 5,000만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2034년 연평균 성장률은 4.33%다. 제조업의 자동화 확산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처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용 노와 오븐은 제철소 용선로에서 제과공장 터널 오븐, 화장로와 쓰레기 소각로까지 용도와 구조가 다양하다. 이들 장비는 가열 방식과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진다. 특히 비전기식 공업용·실험실용 노와 오븐이 분류되는 제8417호는 온도 변화를 이용해 재료를 처리하는 제8419호, 전기식 노와 오븐이 분류되는 제8514호, 반도체 제조용 제8486호 등과 구분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제8417호의 적용 범위와 주요 기기, 다른 호와의 경합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제8417호 품목분류 핵심 기준

제8417호는 기능에 따른 분류이므로 '비전기식(non-electrical)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에 사용하는 고열 발생 기능의 노와 오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실용의 것'을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험실용의 것이라 해서 제90류로 분류하지 말고 제84류로 포함하라는 제84류 기계류의 확장 개념이다. '소각로'를 호의 용어에 포함하는 이유도 공공용의 것은 공업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8417호를 고열 발생 기능의 노와 오븐으로 해석하면 이해된다.

제8417호에는 '증기 가열식의 오븐'이 포함하고, 제8419호에는 '증기가열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 제8417호는 '고열

발생' 기능이고 제8419호는 '열의 변화를 이용한 재료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비교적 저온에서 재료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구분한다.

제8417호의 노와 오븐 외에 관세율표상 비전기식(non-electrical)의 가정용 것은 제7321호와 제7323호로 분류하고, 원자로는 제8401호로, 전로(converter)는 제8454호로 분류한다. 반도체의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하는 용융로와 산화로, 확산로는 제84류 주 제11호(최우선적용 규정)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전기식(전기저항, 전기분해, 유도전류, 마이크로웨이브, 아크, 적외선 방사 등)의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한다.

노 또는 오븐과 일체구조를 이루거나 결합돼 제시된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는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 분류규정)와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 분류규정)를 적용해 제8417호로 분류한다. 다만,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제8428호로 분류한다.

제8438호의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과 제8475호의 '유리나 유리 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가공'에 사용하는 노와 오븐은 제84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기능별 분류체계가 산업별 분류체계보다 우선이므로 해당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417호로 우선 분류한다.

Ⅱ. 제8417호 적용 범위와 분류체계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non-electrical)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furnace)와 오븐(oven)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소각로를 포함한다.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한다.

이들 노와 오븐은 직접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이나 상당한 고온의 열을 구조 내부(chamber)에 발생시키도록 설계돼 있다. 이들 기계는 화상(fire-bed)·도가니(crucible)·레토르트(retort)·선반 위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열처리(예: 로스팅·용융·가소·분해)하는 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증기 가열식 오븐을 포함한다. 특정 형태의 오븐(터널 오븐)에서는 열처리할 물품이 오븐 내를 연속적으로 통과한다(예: 컨베이어 벨트 방식).

제8417호의 노와 오븐은 고온의 열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서 여러 용도로 넓게 사용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8417호의 노와 오븐

	구분	주요 사항
1	**광석이나 황철광 배소용의 오븐과 노**	광석에서 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제련하기 쉬운 산화물 형태로 바꾸기 위해 배소(Roasting, 화학적 열처리)를 수행하며 내화물 반응실, 버너/연소실, 광석 투입 및 배출 장치, 배기가스 및 아황산가스(SO_2) 포집·배출 장치 등으로 구성됨. 반응 중 생성되는 가스(특히 황 성분)에 견디는 높은 내화·내식성이 필수적이며, 기체·고체 간 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단층 구조나 유동층(Fluidized bed) 방식을 주로 사용
2	**금속 용해로 (용선로 포함)**	고체 상태의 금속(철, 비철금속 등)을 고온으로 가열해 액체 상태로 녹이는 설비로 주물공장이나 제강공장에서 필수로 사용. 용선로(Cupola)의 경우 수직 원통형 강철 외피, 내부 내화벽돌, 송풍구(Tuyere), 용탕(액상 금속) 및 슬래그 배출구로 구성됨. 용선로는 코크스와 금속, 석회석을 교대로 넣고 하부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 직접 연소열로 철을 녹이는 구조로 돼 연속적인 용해 작업에 효율적
3	**금속 열처리용 노 및 오븐 (담금질, 소둔[1] 등)**	성형된 금속 부품의 결정 구조를 변화시켜 금속의 경도를 높이는 담금질(Hardening), 응력을 제거하고 연하게 만드는 소둔(Annealing), 조직을 균일화하는 정화(Normalizing) 등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설비. 기밀 가열 실, 산화 방지 제어 장치, 버너 시스템, 온도 정밀 제어기, (담금질의 경우) 냉각조(수증기/유조) 연동 장치 등으로 구성. 금속 표면의 산화나 탈탄을 막기 위해 가열실 내부 공기를 차단 산화 방지용 불활성가스 주입하며 정밀한 온도 및 시간 제어가 중요
4	**침탄로 (Cementation oven Carburizing furnace)**	기어, 베어링, 샤프트 등 표면 마모에 견뎌야 하는 기계 부품의 표면 강화를 목적으로 저탄소강의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켜 속은 질기고 겉은 단단한 구조(표면 강화)를 만드는 침탄 처리 전용 열처리 설비. 기밀 반응 레토르트(Retort), 침탄제(고체·기체) 공급 장치, 버너 가열 제어계, 내부 순환 팬 등으로 구성. 기체 침탄(메탄, 프로판 등 사용)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900~950℃ 고온 환경에서 고농도 탄소가스 상태를 유지해 탄소를 금속 내부로 확산
5	**베이커리용 오븐 (비스킷용 포함)**	제과·제빵 공장에서 빵, 과자, 비스킷 등을 대량으로 굽기 위한 공업용 대형 가열 설비. 단열 가열 실, 버너(가스·오일), 컨베이어 벨트(대형 연속식의 경우), 습도 및 스팀 분사 장치, 열풍 순환 팬 등으로 구성. 생산성에 따라 대형 터널 오븐(컨베이어) 사용. 제품의 맛과 식감을 위해 구역별(Zone) 상·하부 온도 세분화해 제어
6	**코크스로 (Coke oven)**	공기가 차단된 고온 상태에서 공기 없이 유연탄을 가열해 제철용 코크스(Coke)와 부산물(코크스 가스, 타르 등)을 생산하는 대형 설비. 규석 내화벽돌로 만들어진 탄화 실과 연소실, 가스 포집 장치, 석탄 투입 및 코크스 배출기 등으로 구성. 1,000℃ 이상 고온에서 산소 차단한 채 약 18~24시간 동안 석탄을 태우지 않고 휘발분만 날려 보내는 단열·밀폐 구조

1) 금속 재료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상온으로 하는 조작(출처: 토목용어사전)

	구분	주요 사항
7	목탄로 (Charcoal kiln Charcoal furnace)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목재를 열분해해 숯(목탄)을 제조하는 전통적·공업적 설비. 내화물 또는 흙·벽돌로 축조된 탄화 실, 연소 공기 조절용 통풍구, 연도(연통) 등으로 구성. 목재가 직접 타서 재가 되지 않도록 공기 투입량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내부 목재의 자체 열분해 반응을 유도해 탄소 성분만 남김
8	로터리 시멘트 오븐·킬른 및 로터리 석고 오븐	완만한 경사를 가진 대형 원통형 구조물이 회전하면서 시멘트 원료(석회석, 점토 등)를 1,450℃ 이상 고온으로 구워내는 연속식 킬른(Kiln) 설비. 회전하는 경사형 원통 드럼, 내화물 타일, 연소 버너(가류 탄/가스), 회전 구동장치, 가스 집진기 등으로 구성. 원통이 천천히 회전함에 따라 상부에서 투입된 원료가 하부로 이동하며 고온 연소가스와 대향류(Counter-current)로 접촉해 대량 연속 생산
9	유리나 도자 공업용 오븐 및 노 (터널 오븐 포함)	유리 원료를 용해하거나, 위생도기·타일·식기류 등의 성형된 도자기를 구워 단단하게 만드는(소성) 고온용 설비. 고성능 내화벽돌 가열 실, 고온 가스버너, (터널 오븐의 경우) 대차(Car) 추진 시스템과 레일 등 추가 구성돼 예열대·소성대·냉각대로 나뉘어 제품을 올린 대차가 터널을 연속 통과하며 균일한 온도 분포 유지
10	법랑소부로 (Enamel baking oven)	금속(철판, 주물 등) 표면에 유리질 유약(Enamel)을 바른 후, 고온에서 융착시켜 매끄러운 유리 코팅층을 형성하는 소성로. 오염물 차단용 가열 실, 오버헤드 컨베이어(제품 피동용), 이물질 유입 방지용 공기 차단 장치(Air curtain) 등으로 구성. 연소가스나 먼지가 법랑 표면에 닿으면 결함이 발생하므로 간접 가열 방식(라디안 튜브 등)을 사용하거나 내부 분위기를 매우 깨끗하게 유지해야 함
11	원자력/방사성 물질 처리용 특수 노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핵연료 재처리 및 고온 야금 과정에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가열·분리·소성하기 위해 특별 설계된 설비. 방사선 차폐 벽체, 원격 조작 인터페이스, 방사성 가스 필터링(HEPA/차콜) 및 기밀 배기 시스템, 비상 냉각 시스템 등으로 구성. 방사능 누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격리성, 임계 사고 방지 설계, 원격 유지보수 기능 접목
12	화장용 노 (Crematory furnace)	화장장 시설에서 사체를 고온으로 연소시켜 유골로 화장하는 인체·동물 전용 화장로. 1차 연소실(시신 안치), 2차 연소실(연기/악취 재연소), 고성능 가스·유류 버너, 대기오염 방지 집진 설비 등으로 구성. 완전 연소 위해 800~1,000℃ 고온 유지하며 매연·악취·유해 물질(다이옥신 등) 배출을 막기 위해 2차 연소실과 첨단 방지시설을 갖춤
13	쓰레기 등 소각용 소각로 및 유사기기	도시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각종 일반·특수 폐기물 소각 및 감량화 목적으로 불에 태워 부피를 줄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설비. 화상(Stoker, 소각로 바닥 화덕), 폐기물 투입기, 연소실, 폐열회수 보일러, 방지시설(백 필터, 세정 탑 등) 등으로 구성. 화상 이동식(화격자식), 유동층 식, 로터리 킬른식 등 폐기물 종류별 방식 다양.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증기나 전력을 생산(폐열회수)

□ **제8417호에서 제외되는 노와 오븐**

주로 내화재나 도자 재로 구성된 용광로·노(furnace)와 오븐(oven)은 제8417호에서 제외된다. 용광로·노와 오븐의 축조용이나 라이닝용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내화재나 도지재도 제8417호에서 제외해 제69류로 분류한다.

금속제 구조 재료는 일반적으로 제15부에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금속으로 제작된 용광로·노나 오븐(조립 여부를 불문)의 구성 요소로서 함께 제시된 완성형 라이닝, 그 밖의 일체형·전용 도자재나 내화재 부품은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을 적용해 함께 이 호로 분류한다.

많은 공업용 용광로·노와 오븐에는 장입용이나 배출용, 문·커버·화상이나 그 밖의 가동 부분의 조작용, 또는 용광로 경사용 등의 권양용이나 취급용의 기기가 용광로·노나 오븐의 일체형 구성 부분을 이루거나 결합돼 제시될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해 해당 용광로·노나 오븐과 함께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되거나 일체형 구성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제8428호 등으로 분류한다.

1. 제8417호로 분류되는 주요 부분품의 역할과 장착 부위 이미지

1	도어(Door)&사이드 실드 (Side-shield)	고온의 열기 유출을 막기 위해 내화벽돌(Refractory lining)이나 단열재가 내부에 라이닝된 대형 주철/강철 재질의 노의 문 및 측면 보호 차폐판
2	댐퍼(Damper)	배기가스 및 열풍 흐름과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연통(Flue)이나 연도 내부 설치용으로 제작된 강철 재질의 밸브 판(Plate) 시스템
3	송풍구(Tuyere, 튜이어)	용광로(고로)나 정련로 내부로 고온의 공기나 산소를 강하게 분사하는 중공형 구리(Copper) 노즐 부품으로, 초고온을 견디기 위해 수랭식(Water-cooled) 구조
4	관측창 및 아치 (Observation window and Arch)	노 내부 상부의 내화 구조를 지지하는 특수 금속 아치 프레임 및 고열·내열 글라스가 장착된 관측용 윈도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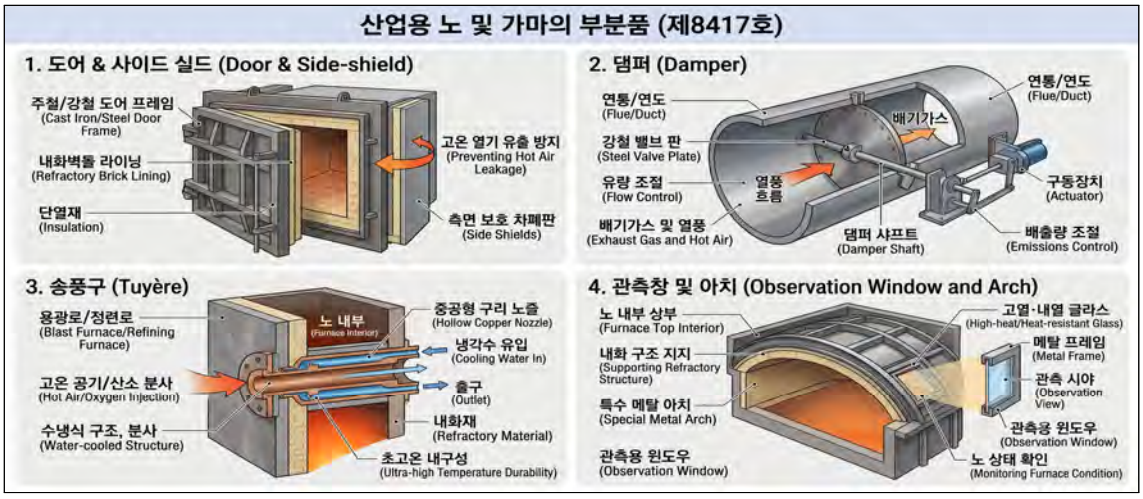

출처: 저자 제공

■ 제8417호의 다양한 기기

광석이나 황철광 배소용 노	금속 용해로	금속 열처리용 오븐
		
로터리 시멘트 오븐	**목탄로**	**법랑소부로**
		
베이커리용 오븐	**쓰레기 등 특수 소각용 노**	**화장용 노**
		
코크스로	**핵분열성 물질 처리로**	**침탄로**
		

출처: 저자 제공

■ **제8417호 제외 물품**
제8417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용의 것이 분류되므로 가정용 또는 주방용의 오븐이나 가스레인지는 제7321호로 분류하고, 노와 오븐의 범주를 넘어서는 오일분해(oil-cracking)장치·오토클레이브(autoclave)·증기가열기와 건조장치는 제8419호로 분류하며, 전기를 이용한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한다.
또한 노 내에 용융(melted)됐거나 고온으로 된 재료를 산소의 강한 기류에 의해 유동시켜서 금속을 교환(예: 철을 강으로 전환)하거나 정제(예: 구리나 니켈의 매트와 방연광을 정제)하는 데 사용하는 전로(converter)는 제8454호로 분류한다.

2. 제8417 소호의 구성

제8417호는 노와 오븐의 용도를 기준으로 3개 소호로 세분화하고, 부분품을 소호로 규정한 총 4개의 소호로 구성돼 있다. 소호의 용어를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8417.10호	배소(roasting)용·용해(melting)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furnaces)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제8417.20호	베이커리(bakery)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제8417.80호	기타
제8417.90호	부분품

3. 제8417호 HSK의 구성

제8417.10 소호의 경우 소호 규정에 열거된 광석과 금속을 기준으로 7단위를 구분하고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광석용과 철강용을 9단위에 특정했다. 잔여 소호(제8417.80호)의 경우, 그 밖의 광물성 재료 처리용과 이화학용으로 7단위를 구분했고 광물성 재료처리용은 다시 다양한 용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제8417호 HSK는 용도에 따라 E1[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일반)] 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분류에 주의해야 한다.

Ⅲ. 제8417호 분류 시 주요 쟁점별 분석

제8417호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8417호의 노와 오븐의 바람직한 해석

제84류 주 제2호에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때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풀어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반도체 산업(제조)에 사용하는 기기는 제8486호로 분류하되, 기능에 따른 분류(제8402호부터 제8424호)가 산업별 분류(제8425호부터 제8478호)와 경합할 때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가 우선한다"라는 취지다.

따라서 **제8417호는 기능에 따른 분류이므로 제8417호의 용어는 '노와 오븐의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비전기식(non-electrical)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에 사용하는 고열 발생 기능의 노와 오븐이다. 여기서 굳이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84류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용 기계가 분류되는데 제84류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해 실험용의 것이라 해서 제90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84류로 포함하라는 확장의 개념이다.

또한 소각로를 호의 용어에 포함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차원에서 살펴보면, 쓰레기와 같은 소각로는 일반적으로 산업용이라기보다는 공공용에 더 가깝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로는 산업용이나 공업용이 아니므로 제8417호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소각로를 호의 용어에 넣은 것이다. 이 역시 **제8417호를 고열을 발생하는 기능의 노와 오븐**으로 바람직하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2. 제8417호와 제8419호, 무엇이 다른가

제8417호의 용어를 고열을 발생하는 기능의 노와 오븐으로 해석하고, 제8419호의 용어를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능의 기계'로 해석하면 **'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과 **노와 오븐도 기계**라는 점에서 **제8417호와 제8419호의 구분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제8417호에는 '증기 가열식의 오븐'도 포함하고, 제8419호에는 '증기가열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호의 용어에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더욱 구분이 어렵다.

물론 제8419호의 용어에 "제8514호의 전기식 노와 오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19호 해설서에 "제8417호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와 오븐"을 제8419호에서 제외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구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보면 **제8417호는 '고열 발생' 기능**이고 **제8419호는 '열의 변화를 이용한 재료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8419호는 비교적 **저온에서 재료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구분해야 한다.

3. 제8417호에서 제외되는 노와 오븐, 그 이유는?

제8417호에는 고열 발생을 위한 기계식의 공업용과 실험실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지만, 그 외에도 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노와 오븐은 관세율표에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전기식(non-electrical)의 가정용 기기로서 발열체를 결합한 고기 굽기용·과자와 빵 제조용의 오븐은 제7321호로 분류되고 비전기식의 가정용 기기로서 가열체를 장착하도록 맞춰져 있지 않은 오븐은 석쇠와 유사한 물품으로 제7323호로 분류된다.

고열이 발생하는 원자로(nuclear reactor)는 '노와 오븐(furnaces and ovens)'의 개념이 아니며 제8401호로 분류하고,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 중앙난방용 보일러도 고열과 관련이 있으나 제8402호와 제8403호로 각각 분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재료를 처리하는 오일분해(oil-cracking)장치·오토클레이브(autoclave)·증기가열기와 건조장치 등은 열 발생과 관련이 있으나 제8419호로 분류한다. 철을 강으로 전환하거나 구리나 니켈의 매트(matte)와 방연광 등을 정제하는 데 사용하는 전로(converter)도 'furnaces and ovens'의 개념이 아니므로 제8454호로 분류한다.

반도체의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하는 대상용융(zone melting)과 실리콘 봉 정제를 위한 1회 용융로, 웨이퍼 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와 웨이퍼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는 제84류 주 제2호와 주 제11호 규정에 따라 제8486호로 우선 분류한다.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기식(전기저항, 전기분해, 유도전류, 마이크로웨이브, 아크, 적외선 방사 등)의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된다.

■ 고온을 이용한 비전기식 노의 분류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300
시행일자	2019년 11월 1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8417.80-1090호
품명	Industrial furnaces for treatment of other mineral materials
물품 설명	제강공장에서 발생한 제강분진(EAFD, Electric Arc Furnace Dust)을 원료로 LNG와 산소를 연소해 고온에서 기화시켜 아연을 분리·회수하기 위한 설비 o 주요 구성 요소별 기능 ① Furnace: 700~1,300℃를 유지할 수 있는 노(爐) ② Burner: LNG와 산소를 혼합해 연소(총 13개) - 4개의 Zone으로 구분해 각 구역별 버너를 제어하며, Zone 1은 약 700℃, Zone 2와 Zone 3은 약 950~1300℃, Zone 4는 약 800~900℃를 유지함. ③ Charge Feeder: 소재가 들어가는 입구로 진동 Feeder가 설치돼 있으며, 코크스와 유사한 덩어리 형태의 재료를 노에 공급 ④ Flue: 회전로상식 노(RHF, Rotary Hearth Furance) 내의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구로, 기화된 아연가스와 연소 후 고온의 배가스가 함께 배출되며, 배출된 아연가스는 후단의 열교환기, 퀜칭(Quenching) 공정을 거쳐 산화아연 분말 형태로 변형됨 ⑤ Discharge Screw: 환원 반응 후 남아 있는 소재가 RHF 내에서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로, 배출된 소재는 버킷 콘베이어를 타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 ⑥ Drive Motor: RHF의 Hearth Car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평상시에는 1대만 가동하고 나머지 1대는 비상시에 사용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300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非)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furnace)와 오븐(oven)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爐)실에서나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爐) 실내에서의 고열 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레토르트(retort)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焙燒)·용해·소성(燒成)이나 분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증기 가열식의 오븐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제강분진(EAFD)에 함유된 아연을 환원해 재활용하기 위한 그 밖의 광물성 재료 처리용의 비전기식 공업용 노(爐)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7.80-1090호에 분류함

4. 제8417호와 경합하는 주요 물품

제8428호 용어에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기와 노와 오븐이 일체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 분류규정)를 적용해 주기능에 따라 제8417호로 분류한다. 일체구조는 아니나 결합돼 제시되는 것은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분류규정)를 적용해 제8417호로 분류한다. 다만, 별도로 제시되는 것은 제8428호로 분류한다.

제8405호 용어에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기는 고체나 액체 연료에 공기,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가소화제를 단독 또는 서로 배합해 고온에서 작용시켜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기체연료로 만든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코크스로(coke oven)는 제8417호**로 분류한다.

제8438호 용어에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4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기능별 분류체계가 산업별 분류체계보다 우선하므로 **기계식의 공업용 제빵용 오븐은 제8417호**로 우선 분류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제8475호의 용어에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 가공용 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가공용에 사용하는 공업용 기계식 노(oven)는 제8417호**로 분류한다.

Ⅳ. 제8417호 품목분류 관련 규정

본문에서 인용한 관세율표의 주(注)와 경합 호의 용어를 정리했다. 제8417호의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furnaces)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3호: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 **제84류 주 제2호**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 **제7321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제7323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 ··· <후략>

■ **제8401호의 용어**

원자로 ··· <후략>

■ **제8402호의 용어**

증기발생보일러 ··· <중략>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제8403호의 용어**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8405호의 용어**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 <후략>

■ **제8419호의 용어**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 ··· <후략>

■ **제8428호의 용어**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 <후략>

■ **제8438호의 용어**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후략>)

■ **제8475호의 용어**
<전략>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면직물 블라우스의 HS Code
블라우스vs.조임끈이 삽입된 그 밖의 의류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오늘날 출근길이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라우스는 언제부터 여성들의 옷장에 자리잡게 됐을까. '블라우스(Blouse)'라는 이름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래 노동자나 농민들이 입던 헐렁한 상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후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며 실용성과 단정함을 갖춘 상의가 여성복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블라우스는 점차 일상복과 오피스룩을 대표하는 의류로 발전했다.

특히 20세기 초 여성들이 교육과 직업의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블라우스는 단순한 패션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다. 당시에는 남성의 셔츠와 비슷한 형태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는 것이 활동적인 여성의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후 레이스와 리본, 자수 등을 활용한 장식적인 디자인부터 단순하고 기능적인 형태까지 시대의 유행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면직물로 만든 여성용 의류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에 해당하는 제6206.30-0000호로 신고했다.

제6206호에 해당하는 블라우스, 셔츠 등은 주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62류 주 제4호에서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블라우스는 비교적 가벼운 상의로서, 밑부분에 허릿단이나 조이는 부분이 없는 의류를 의미한다.

제6206호 분류사례		제6211호 분류사례 (허리 아래 조임, 허릿단 등 확인)	
			

본 물품은 원형 넥라인에 전면이 단추로 완전히 개폐되며 의류 밑단에 **조임끈이 삽입**돼 있는 디자인으로 블라우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다.

본 물품은 면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WOMENS BLOUSE	제6206.30-0000호 E1 8.1%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제6211.42-9000호 A 1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